



# 技術士の「技術主權」에 對한 論

—美國 등록법을 중심으로—

Theory for 「Sovereign Engineering」 of Professional Engineer

姜 泰 權\*

Kang, Tae Keun

## 서 언

아직도 선진국의 진입과정에 있는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커다란 전환기에 처해 있어 갖가지 혼돈이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은 정신적으로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보수적인 것에서 혁신적인 것으로, 전통적인 것에서 현대적인 것으로, 과거의 개념에서 미래의 개념으로 급속히 전환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시대적인 문제점 역시 과거의 것에서부터 미래의 문제점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기술사 등록법의 법적기초, 기술 유자격을 위한 법적기초, 기술사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 기술사 명칭의 보호, 설계와 건설에 있어서의 기술사,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사, 정부에 있어서의 기술사에 대한 법적기초와 기술주권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1. 미국에서의 기술사 등록법의 법적기초

미국에서의 기술사 등록법은 근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국민대중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모든 기술사 등록법은 이러한 취지의 법 조항을 갖고 있다. 대부분 기술법의 문서화는 모델법과 유사하며, 미의회 조례에서 발췌한 다음 사

항을 소개한다.

기술관련법은 대부분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조건으로 한다. 기술활동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모든 기술자격이 구비된 자는 기술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야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공공의 이익과 관심에 직결된다. 기술활동에 관련된 모든 조항은 이 기술정책 선포에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한 자격과 허가 없이 기술활동을 하였을 경우에 강제 집행방법의 장치가 마련되었고 무자격자를 체포, 심판,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검찰총장이 기술등록법 수행을 위하여 법적용역을 제공하는 위원회의 법률고문 역할을 한다. 또한 미국의 대법원의 판례는 기술활동의 자격과 면허는 미국 헌법내에서 재산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기술사들의 기술발휘의 영역은 보존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국가의 경찰력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등록 법을 위반하고 기술자격을 사칭하는 사기꾼, 험잡꾼, 비양심적인 무자격자(주: 영어의 사전적인 번역 그대로)는 벌금으로 1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이며 징역 기간은 30일에서 1년이다. 또한 이러한 법이 없는 주에서도 분명히 일반법으로 처벌 된다.

## 2. 기술 유자격을 위한 법적기초

기술등록과 유자격자의 배출은 주민의 삶, 건강,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인하공업전문대학교수

이러한 법적등록은 의학, 건축, 치과업 의술 등에서도 필요하다. 성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은 주의 경찰력의 보호아래 등록되어야 한다.

국가의 경찰력은 돌팔이나 무능력자, 기술자가 아닌 협잡, 사기꾼(주: 영어의 영역 그대로)으로 부터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국민들은 그 직업에 적합하지 않으면서 그 기술 직업에 종사하는 무법자나 사기꾼으로 부터 보호 받는 것을 원한다. 만약 돌팔이 의사가 전문가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는 의술을 행할 수가 없다. 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기술도 이와 똑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정취지를 뒷받침하는 별칭조항은 없지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기사1·2급, 기술사의 배출 목적도 미국에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기술에서의 이러한 법적인 보호문제는 오래 전으로 부터 한두가지의 형태로 B.C 2,000년 전부터 나타난다.

약 4,000년 전의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의 229, 300 조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어떤 건축가가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았다면 그 지은집이 무너질 것이고 그 집의 소유자는 죽게 될 것이고 그 건축가도 죽을 것이다.

만약 그 집의 소유자의 아들이 죽을 경우에는 그 건축가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근대의 대다수의 국가는 이러한 비양심적이고 무능력한 돌팔이들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73년 부터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기술의 통일과 체계를 구축했다”

### 3. 기술사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

기술사들의 기술 직업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명, 재산의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

다. 실제로 기술사에 의해 행해진 모든 설계, 모든 설치, 모든 조작은 공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거의 기술활동의 전범위는 전술한 바대로 공공의 안전, 건강과 재산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요구되는 기술지식과 함께 기술의 수행능력은 공공의 이익에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그 기술자가 교량을 건설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발전기를 설계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설비와 에너지 관리를 한다면 그는 최종 소비자 즉 국민(경영, 관리, 자본가)의 재산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것을 기술자 자신은 물론 정부관리, 법률가, 기술정책입안가, 자본, 경영주들은 최대한 명심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제도와 운영은 기술의 주체가 아닌 비자격자와 비전문가에 의하여 운영되고 제도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기술제도와 법도 통일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원가 절감은 요원하고 국민 대다수는 알게 모르게 생명, 재산이 노출되고 급기야는 국가간의 경쟁력도 낙후되고 있다. 여하튼 기술이 발전하고 제도가 개선되는 데에는 장애요인은 사람들이 기술자들을 몰랐기 때문이기 이전에 제도의 불합리화 기술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정부부처의 기술엘리트 정책관료의 부족과 국민을 위한 기술정책의 홍보부족, 그리고 기술자 자신들 즉 전형적인 기술자들의 폐쇄성과 단절 등 기술자 자신을 포함하여 이웃과 국민들을 몰랐기 때문이다. 즉 전형적인 기술자들은 오로지 기술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자기에겐 닥쳐올 불합리한 태도나 법률의 제정에 무관심 하다.

이러한 당사자인 기술자들의 속성 때문에 정부관리가 합리적인 기술제도와 정책의 교통정리를 하지 못할 때 전술한 비양심적인 무리들이 편법 불법적으로 제도를 이권적으로 악용할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은 안전과 재산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들을 파이오니아 즉

선구자이며 개척자이고 생산적인 창조자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기술자 자신도 자신의 신변과 법률적 제도적 영역에 대하여 무관심한 습성과 타 영역과도 무관심 배타적인 습성 때문에 제도와 기술정책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기 쉽상이다.

우리나라 기술제도 예외 일수가 없다. 경영주와 관리자 심지어 기술사(기사)간의 정보교환 의견교류 합리적인 주장 등이 상당히 빈곤한 현실이다.

예를들면 전기계가 전형적이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전기기술이 근본적으로 기초적이고 학문적으로 세분화 되는 기초기술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이유는 사회가 다원화되어 가는 추세에 비하여 전기계는 그렇지 못하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국민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기설비 기술사(일본도 전기분야의 전기설비 기술사)가 졸지에 시험합격후 건축기술사로 되는 현실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전기기술이 발전하고 전기인이나 기술사와 단체, 정부기술기관 자신이 발전하려면 기술분야의 전문화와 영역보존과 기술발휘의 분업화가 되고 경쟁과 견제의 분위기속에 창조적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간략 언급한 전기계는 전체 기술계로 보면 지엽적일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의 기술계를 보면 각종 「기술주권」은 각종 기술제도에서 살펴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기술계를 살펴보면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의 주역이며 주체자인 대부분의 기술자는 기술법규와 제도상의 주인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소외되고 들러리화되고 있다. 오로지 행정 편의적인 제도로 기술을 모르는 법률가와 정책입안자들의 단견적이고 이권적인 조항들로 기술관련법이 상층이 되고 있다.

전술한 비양심적이고 비기술적인 사항으로 현행의 법률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많은 실

정이다.

기술사는 전체 기술인을 위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법률과 대항하여 싸우는 선구자적인 자세로 기술계의 발전과 함께 타분야의 기술을 지도 계몽해야 할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경영주체나 전체 기술사, 나아가 국민대중과 전체 과학기술인들의 바램일 것이다. 정신이 변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낙후되고 망한다고 했다. 각종 단체의 편협된 이익과 이권을 정계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불합리하고 협잡적인 제도와 싸워야 한다. 반과학과 반기술적인 이러한 바합리적인 법규는 전술한대로 기술을 사칭하는 사이버, 사기꾼, 협잡꾼과 비양심적인 무리들을 제도적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관련 담당자는 심한 표현 일지 모르지만 장물아비와 같은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와 같이 오늘날 기술계가 이처럼 혼돈의 와중에 빠진 이유의 하나는 정부관리와 국민의 기술사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또한 국민들이 이러한 기술자들의 기술직업을 이해 하는데 커다란 장애 가운데 하나는 여러 직업기술인들 뿐만 아니라 보일러공, 수리공, 운전기사와 같은 여러 직업의 호칭을 다양성을 나타내는 명칭보다 오로지 기사라는 말로 뒤죽 박죽 사용하는 데서 일어난다. 따라서 국가기술 자격법의 기사1·2급과 운전기사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정부관리와 국민을 만든 것은 제도적이고 구조적 불합리한 정책과 현행 기술관계법과 사농공상의 사회 저변의 인식 때문이다.

#### 4. 기술 명칭의 보호

기술자들의 자격법은 국민의 안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술 직업의 적절한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지식을 전수하는 선구자, 교수, 공학인, 현장실무자는 이러한 불

합리한 제도와 기술정책에 대하여 합리적 합법적으로 개선되도록 도전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기술자들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또한 정당한 법의 뒷받침과 심지어 그들의 자격을 인정하는 국가기술 자격법이 있고 우리들이 배운 기술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전술한 대로 우리 기술인의 정당한 삶과 국민대중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운 우리들의 기술을 발휘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술자들이 소유한 기술, 학위, 기술자격은 단순히 휴지 조각이며 근로와 국민을 위한 신성한 우리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기술제도의 초기단계에서는 건축가들에 의하여 지원받는 법률제정으로 구체적인 기술 분야가 무시되거나 제거되었다. 또한 다른 분야 즉 의사들도 열심히 그들의 위생 분야를 독점하려고 했으며 회계사들은 재정적인 진술을 하거나 보고를 하는데에 다른 사람을 제외시키고자 하였다. 기술자 자격과 학위를 가지고 기술연구와 전수를 하려는 선구자적인 엔지니어는 기술자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려는 권리를 제거하려는 행정법률가들에 의하여 제한되는 불합리한 법제정과 싸웠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자조차도 기술자들의 권리를 축소 하려고 노력했다.

기술자, 기사들은 기술사, 기사의 직함을 얻기 위해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년에 걸쳐 노력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므로써 자격을 취득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마땅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기사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 5. 설계와 건설에 있어서의 기술사

미국 여러주의 기술관련법에도 먼저 설계를 지방 허가관청에 보내기전에 설계자의 설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날인을 한다. 건설에 있어서도 주에 등록한 것을 요구

하고 있다.

## 6.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사

산업에서 기술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제 경영에도 뛰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기술자가 하는 일은 창조적이며 모든 산업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품의 원가를 내리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 주고 경영주와 자본가의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자는 경영과 근로자의 양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경영자의 요망사항과 문제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문제도 잘 알고 있다.

## 7. 정부에 있어서의 기술사

국가와 정부는 기술사들에게 독자적이고 기술 발휘의 영역을 보장해 주고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자란 직업은 한나라의 경제와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국가의 경제발전과 기업의 원가절감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의 첨병 기술자이고 또한 정부정책의 호응자 내지 협조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정당한 권리가 박탈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총론적인 기술정책이 각론에서 맞지 않고 탁상공론식이 되는 것은 바로 현장의 원가절감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현장 기술자들의 「기술 주권」과 「주체」가 묵살되는 기술정책의 전적인 부재 때문이다.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계층이며 가장 소시민적인 과학기술인을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정부는 보호 육성하여야만 할 것이다.

## 결 어

지금까지 「기술주권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다. 법률학자와 사회학자는 법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도덕, 언어, 미술, 역사 등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했고, 또한 법은 인간문화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산물이라고 했다. 이와같은 주장은, 옛날 로마시대의 로마법(대륙법)으로, 우리민족의 고유법이 아닌 서양의 법, 다른 민족의 법인 로마법이 법전의 형식을 통하여 한국인의 생활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은 법속에는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또 민족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기술사들과 우리의 단체인 기술사회는 역사의 일부분을 人間文化의 일부분이며, 역사적 산물인 보편 타당한 이러한 法의 文化生活을 누리지 못한 비 문화인(?)이었던 것인가?

변호사, 의사, 고등고시,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심지어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이하생략) 人間文化의 일부분 이라는 각종자격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술사법」은 없었다. 그야말로 압축하면 「技術主權」의 부재였고 技術者[技師, 技術士, 工學人, 科學人포함] 스스로도 제도와 정책, 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몰랐던 것이다.

기술자를 총칭하는 전 기술자들의 대표적이며 지도층이고 국가경쟁력의 첨병인 技術士 회원들의 총체적 「전략」과 「전술」의 부재와 「조직」과 「기금」 등 실천적 전술法에 대한 무관

심, 부재때문으로 잘못과 부족을 스스로에게 돌릴 수 밖에 없다. 여하튼 이런관계로 얽혀 있는 이상 이권당사자는 어느 누구도 技術士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민주화 시대에서는 더욱 그럴것인지도 모른다.

선진국에서도 기술관계법 제정초기에는 전술한 바대로 심지어 공인중개사 조차도 技術者들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다는 무서운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무서운 현실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How to Become a Professional Engineer Mc-Grawley Mill Co  
1) 『Why Engineers Registration?』 31p, 35p.  
2) 『Summary of state Registration Laws』 71p, 72p, 77p.
2. 대한민국 헌법 제 127 조 『과학기술의 혁신 및 인력의 개발과 표준제도의 확립』
3. 국가기술자격법 제 1 조(目的)  
제 4 조(技術資格의 取得)  
제 5 조(類似檢定の 금지)  
제 8 조(登錄)  
제 10 조(技術資格 取得者에 對한 優待)
4. 日本 技術士法 총칙 제 1 조(목적)  
제 2 조(定義)  
제 3 장 제 32 조(등록)
5. 『신명훈, 나명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88. 12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
6. 『오재진, 선탄, 박기준, 김윤식』 한국과학재단 보고서